양재천 수변문화쉼터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 11. 26.

의안 번호	654

복지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1. 6. 강남구청장(문화도시과)

나. 상정의결

-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2025. 11. 27.)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미래문화국장 : 문경수)

가. 제안이유

○ 양재천 수변문화쉼터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다양한 문화공연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사업의 대행 등)에 따라 강남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양재천 수변문화쉼터 시설관리 및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관리 · 운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사업의 대행 등)

- 추진 필요성

・ 강남문화재단은 지역문화 활성화와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변문화쉼터의 문화공간 운영에 적합하며,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행사 운영 역량을 통해 수변문화 쉼터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관리에 적합

○ 위탁대상 사무 등 위탁범위

- 위탁대상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
- 시설 및 자산물품 운영 및 유지관리
- 쉼터 문화공연 기획・운영 및 홍보
-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사용 및 민원사항 처리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소재지 : 강남구 개포동 1279(양재천 우안 밀미리다리 하류)
- 규 모

구분	면적		세부시설
지하1층	지하쉼터	246.26㎡	
	소풍데크	27.30㎡	
지상1층	가설건축물	305.25㎡	내부 219.0㎡ (66.0평) / 복도 33.77㎡ (10.2평) 화장실 27.19㎡ (8.2평) / 기계실 6.22㎡ (1.7평) 관리실 19.07㎡ (5.7평) ※근로자휴게실포함
	전망구역	321.50㎡	
옥상	옥상전망대	229.41㎡	
기타시설물	진입로(계단)	2.1×51m	
	진입로(경사)	1.8×164m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 (3년)

○ 위탁기관 : 강남문화재단

○ 위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1) 소요예산 : 541,399천원(2026년 본예산)

(2) 산출내역

구분		소계	산출내역
307-05 민간위탁금		541,399,000	
	1.인건비	220,331,000	- 시설 5,077,474원×2명×12월=121,860,000원 - 미화 4,102,944원×2명×12월= 98,471,000원
	2.운영경비	171,068,000	- 일반수용비(사무, 청소용품 등) 48,500,000원 - 공공요금(전화,전기,수도 등) 74,842,000원 - 관서운영비, 지급수수료 등 47,726,000원
	3.행사운영비	150,000,000	- 공연팀 출연료 등 96,000,000원 - 홍보비 24,000,000원 - 행사운영경비(설비대여 포함) 30,000,000원

다. 참고사항(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Ⅰ. 동의안 제출 배경

□ 본 동의안은 2025. 12. 31. 위탁 만료 예정인 양재천 수변문화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강남문화재단에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문화재단 조례”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 본 동의안에는 ▸위탁사무명, ▸민간위탁 추진 개요(추진근거, 추진 필요성), ▸위탁대상 사무 등 위탁범위, ▸위탁시설 개요, ▸위탁기간, ▸위탁기관 ▸위탁자

선정방식,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될 사항과 대체로 유사함. 참고로 문화재단 조례 제27조에는 문화재단에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경우 구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의안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이나 절차 등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하려는 사무의 내용은 수변문화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이고, 수탁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강남문화재단을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3년(2026. 1. 1. ~ 2028. 12. 31.)으로 제출되었음. 시설 현황 등 그간의 주요 추진 경위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수변문화쉼터 현황]

□ **시설현황**

❍ 위　치 : 양재천 밀미리다리 우안(서울남부혈액원 앞)

❍ 규　모 : 지하1층~지상1층, 사업부지 2,370㎡

❍ 용　도 : 근린생활시설(업종 : 휴게음식점)

❍ 운영시간 : 연중무휴 09:00~22:00

❍ 운영방향 : 양재천 이용 구민들의 쉼터 및 고품격 문화프로그램 향유 공간
(전시・강연・공연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추진)

❍ 층별 구성

구역별(층별)	면 적		세 부 시 설
지하1층	지하쉼터	246.26㎡(74.6평)	
	소풍데크	27.30㎡(8.3평)	
지상1층	가설건축물	305.25㎡(92평)	내부 219.0㎡ (66평) / 복도 33.77㎡ (10.2평) 화장실 27.19㎡(8.2평) / 기계실 6.22㎡ (1.7평)
	전망구역	321.50㎡(97.4평)	관리실 12.02㎡ (3.6평) 근로자휴게실 7.05㎡ (2.1평)
옥상	옥상전망대	229.41㎡(69.5평)	
기타 시설물	진입로(계단)	2.1× 51m	
	진입로(경사)	1.8× 164m	

□ 위탁현황(강남문화재단)

시설명	소재지	규 모(㎡)	계약일	위탁사유	위탁종류
양재천 수변문화 쉼터	개포동 1279	사업부지 2,370㎡ 건축면적 345.98㎡	2025. 8.14.~ 2025.12.31.	기간만료 (2025.12.31.)	재위탁

□ 주요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 2023. 02. : 市 수변활력거점 조성 공모결과 통보(선정)
- ❍ 2024. 08. : 분야별 공사계약 및 착공
- ❍ 2024. 12. : 강남구 양재천 수변특례구역 지정 고시(제2024-2556호)
- ❍ 2025. 0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 ❍ 2025. 06. : 제328회 강남구의회 민간위탁동의안* 및 추경예산안 의결(치수과) * 동의안 위탁기간(2025.7.1.~2025.12.31. 6개월)
- ❍ 2025. 08. : 강남문화재단-강남구 위수탁 계약 체결
- ❍ 2025. 09. : 양재천 수변문화쉼터 개관식
- ❍ 2025. 10. : 양재천 수변문화쉼터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 ❍ 2025. 11. : 양재천 수변문화쉼터 재위탁 위탁동의안 구의회 상정의뢰
- ❍ 2025. 11. : 양재천 수변문화쉼터 위탁기관 선정 평가
- ❍ 2025. 12. : 위수탁 계약 체결

(자료: 문화도시과 자료 재구성)

□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관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인 수변문화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려는 것은 공유재산 관계 법령상의 관리위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사안임.

○ 한편,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수탁자 선정 방식은 일반입찰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강남문화재단에 수의계약으로 수변문화쉼터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

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2항에서는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는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관련 사항의 이행 여부 또는 향후 이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종합하자면, 9월 수변문화쉼터 개관 이후 짧은 기간 동안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그 성과와 위탁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임. 그러나 이제 막 운영을 시작한 수변문화쉼터의 안정적·지속적 운영 필요성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동안 강남문화재단이 관내 여러 문화시설을 위탁 운영해 오고 있어 관련 노하우가 축적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강남문화재단에 본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려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사료됨.

다만, 최초 위탁 동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위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서의 어려움은 이해되나, 위탁 기간 만료(2025. 12. 31.) 직전에 본 동의안을 제출한 점과 위탁 예산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과 동의안을 함께 제출한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음. 향후 관련 절차의 사전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2025.06.: 제328회 강남구의회 민간위탁동의안 및 추경예산안 의결(치수과) *최초 동의안 위탁기간(2025.7.1.~2025.12.31. 6개월)

아울러 본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공유재산 관계 법령의 절차를 준수하여 위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본 시설이 단순한 쉼터나 카페가 아닌 구민의 문화예술향유권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노력과 함께 문화공연 진행 시 인근 거주 주민에게 소음 등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양재천 수변문화쉼터 위탁 동의안. 끝.

양재천 수변문화쉼터 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654

제출연월일 : 2025. 11. 6.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제 출 부 서 : 문화도시과

1. 제안이유

양재천 수변문화쉼터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다양한 문화공연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사업의 대행 등)에 따라 강남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양재천 수변문화쉼터 시설관리 및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개요

(1)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관리·운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사업의 대행 등)

(2) 추진 필요성

- 강남문화재단은 지역문화 활성화와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변문화쉼터의 문화공간 운영에 적합하며,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행사 운영 역량을 통해 수변문화쉼터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관리에 적합

다. 위탁대상 사무 등 위탁범위

(1) 위탁대상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

(2) 시설 및 자산물품 운영 및 유지관리

(3) 쉼터 문화공연 기획·운영 및 홍보

(4)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사용 및 민원사항 처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1) 소재지 : 강남구 개포동 1279(양재천 우안 밀미리다리 하류)

(2) 규 모

구분	면적		세부시설
지하1층	지하쉼터	246.26㎡	
	소풍데크	27.30㎡	
지상1층	가설건축물	305.25㎡	내부 219.0㎡(66.0평) / 복도 33.77㎡(10.2평) 화장실 27.19㎡(8.2평) / 기계실 6.22㎡ (1.7평)
	전망구역	321.50㎡	관리실 19.07㎡(5.7평) ※근로자휴게실포함
옥상	옥상전망대	229.41㎡	
기타 시설물	진입로(계단) 진입로(경사)	2.1×51m 1.8×164m	

마.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 (3년)

바. 위탁기관 : 강남문화재단

사. 위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

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1) 소요예산 : 541,399천원(2026년 본예산)

(2) 산출내역

구분		소계	산출내역
307-05 민간위탁금		541,399,000	
	1.인건비	220,331,000	- 시설 5,077,474원×2명×12월=121,860,000원 - 미화 4,102,944원×2명×12월= 98,471,000원
	2.운영경비	171,068,000	- 일반수용비(사무, 청소용품 등) 48,500,000원 - 공공요금(전화,전기,수도 등) 74,842,000원 - 관서운영비, 지급수수료 등 47,726,000원
	3.행사운영비	150,000,000	- 공연팀 출연료 등 96,000,000원 - 홍보비 24,000,000원 - 행사운영경비(설비대여 포함) 30,000,000원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관리·운영) ① 수변문화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구청장은 수변문화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7조(사업의 대행 등) ①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 행정사무 중 일부를 재단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